

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

의안
번호

0-285

제출년월일 : 2019. 11.

제출자 : 송바우나 의원 외//인

1. 개정이유

- 윤리심사 보고 및 요구 시한을 연장하여 안산시의회 의원의 윤리의식을 제고
- 조문의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표현을 정리하고 잘못된 문장을 정비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근거규정 명확화(안 제1조)
 -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
- 조문 정비(안 제2조, 제3조~제7조, 제9조, 제10조, 제14조)
 -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표현 정리하고 잘못된 문장 정비
- 윤리심사 보고 및 요구 시한 연장 (안 제5조)
 -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의 윤리심사대상의원 보고와 의원의 윤리심사 대상의원에 대한 윤리심사 요구 시한을 “5일”에서 “10일”로 연장

3. 개정규칙안 : 붙임 1

4. 관계법령 발췌서 : 붙임 2

- 지방자치법 제57조
-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
-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83조, 제84조, 제96조

5. 기타 참고사항

-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 3
- 현행 규칙(전문) : 붙임 4

< 붙임 1 >

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

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자치법」 제57조 및 「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7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안산시의회 의회 운영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고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며, 간사는 의회운영 위원회 간사로 한다.

제3조(기능) ①위원회는 안산시의회의장(이하 "의장"이라 한다)이 「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」, 「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」의 위반에 따른 안산시의회 의원(이하 "의원"이라 한다)에 대한 윤리심사안을 회부하였을 때에 이를 심사·의결 한다.

②위원회는 제1항의 위반행위를 심사하여 그 의결로써 당해 의원에게 위반사실을 통고할 수 있다.

③위원회는 의장이 「안산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83조, 제84조, 제96조에 따른 자격 심사 또는 징계심사안을 회부하였을 때에 이를 심사·의결한다.

제4조(윤리심사요구와 회부) ①의장은 윤리심사 대상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 의에 보고하고, 위원회에 회부한다.

②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 윤리심사 대상의원이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. 이 경우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, 위원회에 회부한다.

- ③의원이 윤리심사 대상의원에 대한 윤리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1/5이상의 찬성으로 윤리심사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지방자치법」 제83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윤리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, 윤리심사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.
- ④의장은 제3항의 윤리심사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, 위원회에 회부한다.

제5조(윤리심사의 요구 및 회부의 시한등) ①제4조제2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윤리심사 대상의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윤리심사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, 그 심사대상의원이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 다만, 폐회기간중에 그 심사대상의원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회의 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

②의장은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윤리심사 회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,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,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윤리심사요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

③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윤리심사회부가 있는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.

제6조(소위원회) ①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.

③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로 한정한다.

제7조(위원회 개회의 통지)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자격·징계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1. 윤리심사 또는 자격·징계심사를 요구한 의장·상임위원장·의원(이하 "심사 요구의원"이라 한다)
2. 윤리심사 또는 자격·징계심사대상의원(이하 "심사대상의원"이라 한다)

제8조(의사) 윤리심사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

제9조(심문)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심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의장을 경유하여 개회일 3일전까지 심사대상의원 등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

제10조(발언 및 변명) ①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 이 경우 심사대상의원은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, 변명하게 할 수 있다.

②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제1항에 따라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발언 요지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위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1조(증빙서류 등의 제출)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·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.

제12조(제척과 회피) ① 위원은 윤리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,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.

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.

제13조(윤리심사의 보고 및 통고) ① 의장은 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가 심사대상의원의 윤리심사안을 심사하여 당해 의원에게 통고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하며, 그 위반事實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고할 수 있다.

제14조(준용)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「안산시의회 회의 규칙」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과	의회사무국
임 안 자	시의원
	송바우나 의원 대표발의